

공립학교 선생의 무능력을 비난한 보도에 과실이 있다 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

Richmond Newspapers v. Lipscomb

362 S. E. 2d. 32(버지니아주 대법원, 1981. 10. 30)

사실개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공립학교의 선생인 립스콤의 이름을 밝혀서 그녀를 비난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립스콤의 동료 1명, 학부모 3명과 학생 2명의 발언을 인용하여 실렸다. 「(립스콤은) 질서파괴적이고 변덕스러우며 건망증이 심하고 불공정하다; 그녀는 채점한 시험지를 수주씩이나 늦게 되돌려주었고 장기간결근하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학생이 똑똑할수록 그녀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립스콤은 위 기사를 쓴 기자 콕스와 그가 속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콕스에 대하여 45,000 달러의 징벌적 배상과 양 피고에 대하여 1백만 달러의 보상적 배상을 명한 배심의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심 법관은 그의 권한에 의하여 보상적 배상액을 1십만 달러로 감축하여 판결하였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감축된 보상적 배상의 지급부분은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1. 공립학교 선생이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무능력하다고 비난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자가 보도되어 그 선생이 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경우, 학교선생은 보도매체에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이름과 기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는 비난을 충분히 반박할 수 없으며 그 선생이 학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학교선생은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
2. 학교선생의 명예훼손적 기사의 취재원들이 그녀에게 악의를 품고 있었고, 기자가 미리 사실들을 결정하였으며, 기자가 그녀에게 유리한 정보를 누락하였고, 기자가 기사 마감시간 없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학교선생의 주장은 그 기자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나, 그러한 주장이 입증될 경우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판결이유

휘팅 판사의 견해

(전략)

III. 립스콤이 뉴욕타임즈 사건의 공적인 인물인가?

우리는 먼저 사실심 법원이 립스콤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진실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보도하였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심이 원고를 미국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 사건의 판결에서 말하는 공적인 인물로 분류한 판단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위 사건에서 미국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그의 공적인 행위와 관련된 허위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공표가 현실적 악의로 즉 허위인 것을 알거나 진실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는 개인적인 원한의 동기 또는 나쁜 마음을 의미하는 보통법상의 악의와는 혼동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 사건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를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립스콤은 공무원이기는 하나, 교사들은 변호사보다 보도매체에 정근할 기회가 훨씬 더 적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비난을 반박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적다. 또한 립스콤은 학생들의 이름과 기록 등의 공개를 금지한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비난들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립스콤이 어떠한 공적인 업무나 학교정책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1년의 활동은 가르치는 것과 한시적인 학과장으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립스콤의 학과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비판도 없음을 주목한다 - 모든 비판은 그녀의 가르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공무원들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공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립스콤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인 공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립스콤은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말하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심 법원이 립스콤이 보상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그녀에게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다.

IV. 과실있는 발표

우리는 다음으로 사실심의 배심이 원고에게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립스콤에게 보상적 배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심리를 위하여 이 사건을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 양당사자는 상소심의 구두변론 이후에 보충적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배심의 진실인지의 여부를 부주의 하게 무시하였다는 판정속에는 과실 있음이 포함된 것인가?, 둘째 만일 그렇다면 콕스의 조사에 과실있다는 판정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한가? 우리는 *Great Coastal Express v. Ellington* 230va, 142(1985) 사건에서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의 높은 기준은 보상적 배상을 구하는 일반개인이 입증하여야 할 과실의 기준을 포함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의 배심은 콕스가 진실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이 아니라 배심이 사실상의 쟁점인 과실 유무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콕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Great Coastal Express* 사건의 판시를 적용할 것이다. 사실심 법원은 배심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쟁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외적인 평판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별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콕스 및 그 편집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은 립스콤의 평판에 대한 실질적인 손상의 위험성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콕스는 들은 이야기들의 정확성을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감독자들, 한 명의 동료교사와 불만을 가진 학생들과 한번인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립스콤의 교사로서의 훌륭한 성품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실질적으로 콕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한 부정적 이야기들을 모두 반박하였다. 부정적인 증언을 반박한 학생들은 리치먼드 지구내에서는 언제든지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국은 콕스에게 립스콤의 반의 다른 학생들의 이름이나 주소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배심원들은 증거들로부터 콕스가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압수할 수 있었으나 그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놓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사실상 한 학생은 콕스에게 다른 학생들의 명단의 일부를 주었으나 콕스는 명백히 그 정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배심은 합리적인 주의를 가진 기자라면 그러한 비난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상당수의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만났어야 하였다고 결론지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콕스의 사용자인 신문회사가 상급자책임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여 그의 과실있는 피용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책임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

V.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의 유무

배심은 콕스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평결하였다. 이 평결을 유지하려면 립스콤은 개인으로서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록 전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립스콤은 콕스가 진실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점을 고려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립스콤은 콕스의 취재원들이 립스콤에 대하여 가졌던 악의가 그들의 정직성에 대하여 명백한 의심을 제기할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립스콤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표현들에 나타나는 편견을 제외하고는, 불평하는 부모들이거나 불평하는 아이들의 부모인 의과대학의 교수, 성직자, 리치먼드학교 선생과 주정부 보건국 공무원의 신뢰성을 탄핵할 요소는 없다. 정보제공자들에게 그들의 정직성을 의심할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립스콤은 콕스의 증언은 사실들이 먼저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립스콤이 이용하고 있는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1967)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잡지사에서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세속적인 추문을 폭로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공표로부터 시작하여 잡지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편집진의 결정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고, 본질적으로 이 특정 기사속의 비난에 국한되어 있다. 립스콤은 콕스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들을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들을 억지로 모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3) 립스콤은, 콕스가 이야기 중 확실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결론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생략하였다고 주장한다. 콕스는 립스의 장기간의 결근은 대부분 그녀의 약혼자의 죽음으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립스콤은,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극히 부당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결론에 대한 이 호의적 설명의 누락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극히 부당하게 하였거나 진실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립스콤은 나아가 콕스는 미리 결정된 기사의 줄거리에 반대되는 그녀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포함시킬 것을 일관되게 거부하였음을 비난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립스콤은 기사마감시간의 압력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인용한 판례들에 의하면 마감시간이 없었음은 고려되어야 할 한 요소이지만 그 각 사건마다 진실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콕스가 그 기사를 쓸 당시 그가 가진 증거가 불충분하여 발표전에 더 조사를 요하였다면 그러한 조사를 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다.

(5) 신문사 간부들이 그 기사의 정확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들이 콕스가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발표를 미룬 점으로도 입증된다고 한다. 그러나 콕스의 증언은 이와 반대의 취지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6) 립스콤의 마지막 비난은 콕스가 그녀와 학교이사회의 변호사와 교장 등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나, 이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콕스는 그들에게 이 논쟁에 관하여 립스콤측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편견을 고려할지라도 위 여섯 가지 점 중 어느 하나도 법적으로 배심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모든 점들을 함께 고려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미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과실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나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 있음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기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콕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취소한다.